

##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▣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(주식) 투자설명서 변경 전·후 비교표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						
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. 집합투자기구 명칭	클래스 추가	신설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-Pe</td> <td>BV077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-P2e</td> <td>BV080</td> </tr> </table>	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	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클래스 C-Pe	BV077	클래스 C-P2e	BV080
			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	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				
			클래스 C-Pe	BV077					
클래스 C-P2e	BV080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-Pe</td> <td>BV077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-P2e</td> <td>BV080</td> </tr> </table>	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	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클래스 C-Pe	BV077	클래스 C-P2e	BV080			
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	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							
클래스 C-Pe	BV077								
클래스 C-P2e	BV080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-Pe</td> <td>BV077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-P2e</td> <td>BV080</td> </tr> </table>	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	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클래스 C-Pe	BV077	클래스 C-P2e	BV080			
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	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							
클래스 C-Pe	BV077								
클래스 C-P2e	BV080								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추가	신설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-Pe</td> <td>BV077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-P2e</td> <td>BV080</td> </tr> </table>	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	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클래스 C-Pe	BV077	클래스 C-P2e	BV080
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	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							
클래스 C-Pe	BV077								
클래스 C-P2e	BV080								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신설	클래스 C-Pe, 클래스 C-P2e 추가신설						
제 2 부.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	신설	<p>운용현황</p> <p>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</p>						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클래스 추가	신설	<p><b>클래스 C-Pe</b></p> <p>최초설정일: 2017.08.02</p> <p>가입자격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“연금저축계좌” 를 통하여 판매회사의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</p> <p>선취판매수수료: 없음</p> <p>환매수수료: 없음</p> <p>보수:    집합투자업자   연 0.7000%</p> <p>          판매회사        연 0.3700%</p> <p>          신탁업자        연 0.0350%</p> <p>          사무관리회사   연 0.0250%</p> <p>          총보수         연 1.1300%</p> <p><b>클래스 C-P2e</b></p> <p>최초설정일: 2017.08.02</p> <p>가입자격: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,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(IRP)를 개설한 투자자 전</p>						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						
			<p>용으로 판매회사의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</p> <p>선취판매수수료: 없음</p> <p>환매수수료: 없음</p> <p>보수: 집합투자업자 연 0.7000%</p> <p>          판매회사 연 0.3500%</p> <p>          신탁업자 연 0.0350%</p> <p>          사무관리회사 연 0.0250%</p> <p>          총보수 연 1.1100%</p>						
<p>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p> <p>가. 매입</p> <p>(2)종류별 가입자격</p> <p>나. 환매</p> <p>(3)환매수수료</p>	클래스 추가	신설	<p>(2)종류별 가입자격_</p> <p><b>클래스 C-Pe</b></p> <p>구분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“연금저축계좌”를 통하여 판매회사의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</p> <p>선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: 없음</p> <p>후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: 없음</p> <p><b>클래스 C-P2e</b></p> <p>구분: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,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(IRP)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회사의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</p> <p>선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: 없음</p> <p>후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: 없음</p> <p>(3) 환매수수료(90 일 미만 환매시):</p> <p>클래스 C-Pe, 클래스 C-P2e : 없음</p>						
<p>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클래스 추가	신설	<p>선취판매수수료: 없음</p> <p>환매수수료: 없음</p> <p>후취판매수수료: 없음</p> <p>합계: 클래스 C-Pe, C-P2e: 없음</p> <p>클래스 C-Pe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84 1886 1401 2020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부과비율 (연간,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집합투자업자보수</td> <td>0.7000</td> </tr> <tr> <td>판매회사보수</td> <td>0.37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부과비율 (연간,%)	집합투자업자보수	0.7000	판매회사보수	0.3700
구분	부과비율 (연간,%)								
집합투자업자보수	0.7000								
판매회사보수	0.3700								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	
			신탁업자보수	0.0350
			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	0.0250
			기타비용	0.0135
			총보수·비용	1.1300
			증권 거래비용	0.0000
			클래스 C-P2e	
			<b>구분</b>	<b>부과비율 (연간,%)</b>
			집합투자업자보수	0.7000
			판매회사보수	0.3500
			신탁업자보수	0.0350
			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	0.0250
			기타비용	0.0135
			총보수·비용	1.1100
			증권 거래비용	0.0000

-끝-